

# 예 산 총 칙

2017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26,331,336	12,789,940
일반회계	381,254,328	11,437,630
특별회계	45,077,008	1,352,310
공기업특별회계	16,050,108	481,503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6,050,108	481,503
기타특별회계	29,026,900	870,807
희망복지기금특별회계	1,066,650	32,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08,000	24,240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2,655,000	79,650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7,737,466	532,124
주차장사업특별회계	259,928	7,798
기반시설특별회계	157,230	4,717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5,378,000	161,340
발전소주변주민복지지원사업	176,900	5,30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87,726	23,632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848.969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8,800,000 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 (1)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 (2) 재무활동 경비
- (3)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 (4)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